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천하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290

발의연월일: 2025. 2. 19.

발 의 자:천하람·정성호·이준석

주호영 • 이개호 • 황운하

안규백 • 이주영 • 강준현

김교흥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수출 및 국가이미지 환경에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에서 지출한 제작비용에 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영상문화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.

콘텐츠 산업은 투입 대비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고부가가치 국가 전략산업이며, 청년 종사자가 타 산업에 비해 높아 청년 일자리 창출 로 국가 미래 경쟁력이 높은 산업임.

그러나 영상콘텐츠 제작 단계는 크게 제작준비-촬영제작-후반제작의 3단계로 구성되고 유통과 정산까지 수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바, '3년일몰제'는 동 제도가 추구하는 영상콘텐츠 제작비 지원 및 투자 활성화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제약이 될 수 있음.

이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특례의 일몰기한을 2035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연장하여 영상문화콘텐츠 경쟁력을 대내외적으로 향 상시키려는 것임(안 제25조의6제1항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25년 12월 31일"을 "2035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5조의6(영상콘텐츠 제작비용	제25조의6(영상콘텐츠 제작비용
에 대한 세액공제) ① 대통령	에 대한 세액공제) ①
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<u>2025</u>	<u>2035년</u>
<u>년 12월 31일</u> 까지 제1호 각 목	12월 31일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	
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	
상콘텐츠(이하 이 조에서 "영	
상콘텐츠"라 한다)의 제작을	
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	
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	
용(이하 이 조에서 "영상콘텐	
츠 제작비용"이라 한다)이 있	
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	
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	
금액을 합한 금액을 대통령령	
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	
영상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되	
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	
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	
하여 시청에 제공된 과세연도	
의 소득세(사업소득에 대한 소	
득세만 해당한다) 또는 법인세	
에서 공제한다.	

1.・2. (생략)	1. • 2. (현행과 같음)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